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0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 박지원·김용민·전용기

이성윤 • 전진숙 • 서영교

문진석 • 임미애 • 전현희

박균택 • 이재정 • 정진욱

장철민 · 장경태 · 이기헌

정준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"북한이탈주민"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.

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,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 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,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

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제24조의2제1항 중 "탈북 청소년(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)" 을 "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<u>군사분</u> 1. -----<u>다음</u> 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 <신 설> 가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 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 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 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 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 한 사람 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<신 설>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 지 아니한 사람 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2(북한이탈주민 예비학 제24조의2(북한이탈주민 예비학 교의 설립) ① 통일부장관은 교의 설립) ① -----

탈북 청소년(제3국에서 출생한

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-----

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	
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	
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)의	
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	
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	
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	
민 예비학교를 설립・운영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